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9급 2명) 및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재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

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6호 중 “수송시스템 및 항공우주 산업”을 “수송시스템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자동차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을 “자동차 산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954”를 “9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3”을 “9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89”를 “89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0”을 “378”로 하고, 일반직 계 “380”을 “3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4”를 “37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66호 및 같은 항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 정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6일

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38”을 “37”로 한다.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제0000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59
정무직 계	4
장관	1
통상교섭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6
일반직 계	948
고위공무원단	3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3급 또는 4급 이하	894
전문직공무원	18
전문경력관	3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2조 관련)

제5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또는 5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략)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5. (생략)	1. ~ 65. (현행과 같음)
66. 자동차 등 <u>수송시스템 및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u>	66. ----- <u>수송시스템 산업</u>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68. <u>자동차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u>	68. <u>자동차 산업</u> ----- ----- ----- -----
69. ~ 98. (생략)	69. ~ 98. (현행과 같음)
제52조(한시정원) ① <u>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u>	제52조(한시정원) <삭 제>

<u>장관은 총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4</u>	<u>956</u>	+2
•	•	•	
•	•	•	
일반직 계	<u>943</u>	<u>945</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89</u>	<u>891</u>	+2
•	•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80</u>	<u>378</u>	-2
일반직 계	<u>380</u>	<u>378</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4</u>	<u>372</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